

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변경 사항	결산	변동성
1	미래에셋상생 ESG 증권투자자신탁(주식)	1), 9)	○	-
2	미래에셋좋은기업 ESG 증권투자자신탁(주식)	1), 9)	○	○
3	미래에셋 QV 솔루션 3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2), 9), 10), 11)	○	○
4	미래에셋 QV 솔루션 5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2), 9), 10), 11)	○	○
5	미래에셋 QV 솔루션 7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2), 9), 10), 11)	○	○
6	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 9-2 호	3), 9)	○	-
7	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 1 호투자회사	3), 9), 11)	○	-
8	미래에셋법인전용 MMF1 호(국공채)	4)	-	-
9	미래에셋법인전용 MMFA-4 호	4), 9), 11)	-	-
10	미래에셋법인전용지속가능 MMF	4)	-	-
11	미래에셋라틴인덱스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5), 9), 10), 11)	-	-
12	미래에셋브릭스인덱스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5), 6), 9), 10)	-	-
13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인덱스안정형 4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), 6), 9), 10)	-	-
14	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25 혼합자산투자자신탁	6)	-	○
15	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30 혼합자산투자자신탁	6)	-	○
16	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35 혼합자산투자자신탁	6)	-	○
17	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40 혼합자산투자자신탁	6)	-	○
18	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45 혼합자산투자자신탁	6)	-	○
19	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50 혼합자산투자자신탁	6)	-	-
20	미래에셋전략배분 TDF 솔루션혼합자산투자자신탁	6)	-	-
21	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환형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-	○	○
22	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)	9)	○	○

2. 변경 사항:

- 1) 모투자신탁 투자 전략 변경
- 2) 투자신탁 명칭 변경
- 3) 세제 혜택 연장 관련 변경
- 4) MMF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
- 5) 지수 명칭 변경
- 6) 모투자신탁 지수 명칭 변경
- 7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8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변경사항 반영
- 9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- 10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11)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2년 4월 1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1) 모투자신탁 투자 전략 변경

[투자설명서]

- 미래에셋좋은기업ESG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9.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1) 투자전략 (운 용전략 및 투자방침) <모투자신탁의 투 자전략>	③ ESG 기업 분석 시 다수의 외부리서치기관 의 자료를 참고하여 기업 지속 가능 여부 평 가 및 이슈 분석을 진행하여 미래에셋자산운 용의 운용 시스템과 시너지 창출을 모색합니 다.	③ <u>당사 ESG 리서치 조직에서 발간하는 ESG 제도, 동향 및 기업 모니터링 자료와 더불어</u> , 다수의 외부 리서치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여 기업의 지속가능 여부 평가 및 이슈 분석을 진행하는 등, 미래에셋자산운용의 <u>차별화된</u> 운용-리서치 시스템을 활용합니다.

2) 투자신탁 명칭 변경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투자신탁 명칭>	미래에셋 QV <u>솔루션</u> 3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 권혼합-재간접형)	미래에셋 QV <u>글로벌자산배분</u> 3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
	미래에셋 QV <u>솔루션</u> 5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 권혼합-재간접형)	미래에셋 QV <u>글로벌자산배분</u> 5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
	미래에셋 QV <u>솔루션</u> 70 증권투자신탁 1 호(주 식혼합-재간접형)	미래에셋 QV <u>글로벌자산배분</u> 70 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

3) 세제 혜택 연장 관련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4. 나. 과세 (4)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모부동산집 합투자기구에 관 한 사항	-가입기간 <u>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</u>	-가입기간 <u>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</u>

4) MMF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사항 반영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. 나. 투자제한	6. 가중평균 잔존만기 이 투자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<u>75일</u> 을 초과하는 행위	6. 가중평균 잔존만기 이 투자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<u>60일</u> 을 초과하는 행위
제2부. 9.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1) 투자전략 (운용전략 및 투자방침)	<신설>	금융투자업규정 7-36조1항2호 각목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7-36조1항2호 각목의 자산을 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<u>운용합니다.</u>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~5. <생략></p> <p>6. 이 투자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<u>75일</u>을 초과하는 행위</p> <p>7.~12. <생략>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~5. <생략></p> <p>6. 이 투자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<u>60일</u>을 초과하는 행위</p> <p>7.~12. <생략></p>

5) 지수 명칭 변경

-미래에셋라틴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지수 명칭>	<u>S&P/BNY Mellon Latin America 35 ADR Index</u>	<u>S&P Latin America 35 ADR Index</u>

-미래에셋브릭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
-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인덱스안정형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지수 명칭>	<u>S&P/BNY Mellon BRIC Select ADR Index</u>	<u>S&P BRIC Select ADR Index</u>

6) 모투자신탁 지수 명칭 변경

-미래에셋브릭스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지수 명칭>	<u>S&P/BNY Mellon BRIC Select ADR Index</u>	<u>S&P BRIC Select ADR Index</u>

8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변경사항 반영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 QV 솔루션 3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4	4	7.62	7.57
미래에셋 QV 솔루션 5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4	4	9.44	9.1
미래에셋 QV 솔루션 70 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3	3	11.72	11.26
미래에셋글로벌별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19.91	19.21
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)	5	5	3.56	3.57
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25 혼합자산자투자신탁	4	4	8.28	8.18
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30 혼합자산자투자신탁	3	3	10.66	10.28
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35 혼합자산자투자신탁	3	3	12.32	12.03
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40 혼합자산자투자신탁	3	3	13.18	12.94
미래에셋전략배분 TDF2045 혼합자산자투자신탁	3	3	13.57	13.3
미래에셋좋은기업 ESG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2	2	23.84	24.04

9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2.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(1) 평 가방법	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 이 발표하는 가격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 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 가</p>	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(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 이 발표하는 가격(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)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 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 가(해외 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 종시가)</p>

10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부. 2. 집합투 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<신설>	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해당사항 없음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 금융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11)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8. 가. 투자대상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	<삭제>
제2부 8. 나. 투자제한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<생략>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<생략></u>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삭제>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

	하다.	러하지 아니하다.
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	<삭제>
제17조 (운용 및 투자 제한)	2. <생략> 가. <생략>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</u> <u>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<생략>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</u> <u>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<u>또는 <생략></u>	2. <생략> 가. <생략> 나. <삭제>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<u>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</u> <u>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</u> <u>야 한다.</u> ②~③ <생략> <신설>	<u>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</u> <u>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</u> <u>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</u> <u>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</u> <u>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u> ②~③ <생략> <u>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</u> <u>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</u> <u>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</u> <u>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</u> <u>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</u> <u>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</u> <u>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u>

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계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